

평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90
----------	-----

제출연월일 : 2010. 6.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가. 식품위생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 근거 조항 및 자치법규의 체계, 형식, 자구 등의 조문을 재정비 하고자 함
- 나. 식품접객업소에 대한接客서비스 향상 등 음식문화 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우수업소 인센티브 등 지원사항 등을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근거 조항 및 체계, 형식, 자구 등의 조문 등을 재정비 함
(안 제1조, 제3조, 제11조, 제15조)
- 나. 기금의 사용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14조)
 - 식품위생법 제89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내용으로 함
- 다. 음식문화개선사업추진 우수업소 인센티브 등 지원사항 명시(안 제14조제2항)

3. 참고사항

- 가. 관 계 법 령 : 붙임
- 나. 예 산 조 치 : 해당없음
- 다. 관계부서협의 : 해당없음
- 라.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마. 입 법 예 고 : 2010. 02. 17 ~ 03. 09(20일간), 제출의견 없음

평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을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식품위생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1조” 를 “「식품위생법」 제89조” 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모범음식점이라 함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모범음식점 이란 「식품위생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으뜸음식점이라 함은” 을 “으뜸음식점 이란”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을 “시설개선 자금 이란” 으로 한다.

제3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 중 “평창군재무회계규칙” 을 “「평창군재무회계규칙」” 으로 한다.

제11조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기금의 사용범위) ① 기금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체 운영에 관한 사업
2. 식품위생의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
3. 모범음식점(으뜸음식점)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
5. 소비자식품감시원의 교육 및 활동지원
6. 그 밖의 법 제89조에서 정하는 사업 등

②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개선을 위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으뜸음식점, 모범음식점 및 대표음식점(음식 맛집) 등 음식문화개선 실천 우수 업소는 다른 업소보다 차등지원 할 수 있다.

제15조 중 “지방재정법” 을 “「지방재정법」”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이 조례는 <u>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u>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u>식품위생법</u>」 제89조-----</p>
<p>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u>“모범음식점”이라 함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u> 군수가 모범업소로 지정한 일반음식점을 말한다.</p> <p>2. <u>“으뜸음식점”이라 함은 모범음식점 중 강원도지사가</u> 지정한 일반음식점을 말한다.</p> <p>3. <u>“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u>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u>“모범음식점”이란</u>----- 「<u>식품위생법</u>」 (이하 “법”이라 한다)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p> <p>2. <u>“으뜸음식점”이란</u> -----.</p> <p>3. <u>“시설개선자금”이란</u> -----.</p>
<p>제3조(기금의 관리·운영)</p> <p>①~② (생략)</p> <p>③ 기금의 출납은 <u>평창군재무회계규칙</u>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제3조(기금의 관리·운영)</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u>평창군재무회계규칙</u>」-----.</p>
<p>제11조(용자대상)기금의 용자대상은 평창군 내에 주소를 두고 <u>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u>의 영업을 하는 자중 군수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한다.</p>	<p>제11조(용자대상)----- 「<u>식품위생법 시행령</u>」 제21조의-----.</p>

제14조(모범음식점의 육성 및 지원)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으뜸음식점과 군수가 지정한 모범음식점은 다른 업소보다 차등지원 및 우선지원 할 수 있다.

제15조(관계규정) ①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이 행한다.
 ②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평창군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기금의 사용범위) ① 기금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체 운영에 관한 사업
2. 식품위생의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
3. 모범음식점(으뜸음식점)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
5. 소비자식품감시원의 교육 및 활동지원
6. 그 밖의 법 제89조에서 정하는 사업 등

②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개선을 위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으뜸음식점, 모범음식점 및 대표음식점(음식 맛집) 등 음식문화개선 실천 우수 업소는 다른 업소보다 차등지원 할 수 있다.

제15조(관계규정) ① 「지방재정법」-----

 -----.

② -----

「평창군재무회계규칙」-----
 -----.

관계법령 발취

□ 식품위생법

제47조(위생등급)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식품등의 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제89조(식품진흥기금) ①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용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 영양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 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용자 사업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국민영양,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④ 기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운영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가공업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3. 식품첨가물제조업
4. 식품운반업
5. 식품소분·판매업
6. 식품보존업
7. 용기·포장류제조업
8. 식품접객업